#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김승수・이종배・박충권

김기현 · 김성원 · 윤상현

박성민 • 이인선 • 김석기

구자근 · 강대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

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 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 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9조).

#### 법률 제 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동거가족

은"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부양의무자에"를 "동거가족에"로, "부양의무자의"를 "동거가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동거가족이"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동거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양의무자의"를 "동거가족의"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 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

했

혅

- 1. ~ 3. (생략)
- ② (생략)

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 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 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 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3) -----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 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 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신 설>

-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조 청) ① (생 략)
  -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 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 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 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 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 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u>	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u>동거가족은</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 </u>	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
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
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
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
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 수당 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 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 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저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u>동거가족에</u>
<u>동거가족의</u>
② (현행과 같음)
③
<u>동거가족이</u>
④ (연영과 실금) ]]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 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 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5조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 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 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u>동</u>
<u> 거가족이</u>
,
<u>동거가족의</u> -

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 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 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 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 ⑦ (생 략)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
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
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
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
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
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u>.</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	19조(양로지원)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u>
	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u> </u>
	•